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502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3 |
| 1. 건강보험료 장기·고액채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근거 신설 ... | 3 |



## I. 개요

### 1.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502호)

####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지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5. 13.

(3) 회 부 일 : 2025. 5. 14.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 예로,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장기·고액체납세대의 수는 2019년 말 9,100세대에서 2023년 말 14,500세대 수준으로 4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음.

이에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관세법」 등과 같이 공단으로 하여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1. 건강보험료 장기·고액채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근거 신설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채납처분비의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채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제83조의2(출국금지 요청)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채납처분비(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연체금과 채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채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공단에 |

|  |                                                                                                                                                                                                                                        |
|--|----------------------------------------------------------------------------------------------------------------------------------------------------------------------------------------------------------------------------------------|
|  | <p><u>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u></p> <p><u>③ 공단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및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u></p> <p><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

※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한 급여의 제한<sup>1)</sup>, 무한 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부의무 부과<sup>2)</sup>, 연체금 징

1)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2.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

④ 공단은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수3), 독촉 및 체납처분4),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5)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 현황(2025년 4월말 기준)을 살펴보면, 총 체납자 수는 94만 9,151명6), 체납액은 2조 8,877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수는 3,937명, 체납액은 3,889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②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연체금)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 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제1항제1호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제1항제2호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 4)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5)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 ③ 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와 관련한 납부능력의 기준, 공개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수, 직장가입자 중 법인의 경우 개소수를 의미함.

<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1년 경과 장기체납자 현황(2025.4월말 기준) >

(단위: 명<sup>7)</sup>, 억원)

| 구분            |    | 3천만원 미만 |        | 3천만원 이상<br>5천만원 미만 |       | 5천만원 이상<br>1억원 미만 |       | 1억원 이상 |       |
|---------------|----|---------|--------|--------------------|-------|-------------------|-------|--------|-------|
|               |    | 체납자수    | 체납액    | 체납자수               | 체납액   | 체납자수              | 체납액   | 체납자수   | 체납액   |
| 지역가입자         |    | 887,188 | 17,863 | 1,712              | 646   | 661               | 425   | 53     | 63    |
| 직장<br>가입<br>자 | 개인 | 20,418  | 1,991  | 1,558              | 594   | 907               | 606   | 272    | 559   |
|               | 법인 | 31,789  | 2,926  | 2,549              | 969   | 1,435             | 961   | 609    | 1,273 |
|               | 계  | 52,207  | 4,916  | 4,107              | 1,563 | 2,342             | 1,568 | 881    | 1,833 |
| 합계            |    | 939,395 | 22,779 | 5,819              | 2,209 | 3,003             | 1,993 | 934    | 1,896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다른 법률에서 체납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8), 「지방세징수법」 9), 「관세법」 10)에서는 정당한

7)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수, 직장가입자 중 법인의 경우 개소수를 의미함.

8) 「국세징수법」 제113조(출국금지)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및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출국금지 요청) ① 법 제1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25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9) 「지방세징수법」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사유없이 5천만원(국세, 관세) 또는 3천만원(지방세)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

다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관세법」 제116조의5(출국금지 요청 등) ① 관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여 체납된 관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출국금지 요청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2.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sup>12)</sup>에서는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 및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체납보험료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출국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출국금지 요청 관련 요건 및 절차가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관세법」의 경우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

---

12)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국세: 5천만원
2. 관세: 5천만원
3. 지방세: 3천만원

고 있으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출국 금지 요청 전에 여성가족부에 설치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장기·고액채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시에도 유사 입법례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료를 채납한 자에 한정하는 방안 또는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sup>13)</sup>

- 둘째, 현재 다른 법률에 규정된 출국금지 요청 사유는 주로 형사 재판, 형집행, 조세징수, 범죄수사 등 국가 형벌권 또는 조세징수권 등의 확보를 위한 것인데, 건강보험의 경우 조세가 아닌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 채납액의 경우 조세채권이 아닌 건강보험공단과 사인인 가입자·사용자 간의 채권인 점을 고려하여 출국금지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sup>14)</sup>

13) 참고로, 현행법 제83조에서는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요건 관련,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납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으며, 인적사항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공개대상자에게 서면 통지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고액·상습채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채납처분비(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연체금과 채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채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채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채납된 보험료, 연체금과 채납처분비와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채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채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14) 참고로 2020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양육비 채무 미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제도의 경우, 논의 과정에서 양육비 관련 채권은 민사채권으로 기존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민사채무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된 바 있으나, 양육비 채무의 경우 이행명령, 감치명령 등의 제도를 두고 있어 다른 사인간 채무와 달리 불필요가 있고, 아동의 복리 및 생존과 관련된 문제로 보아야 하며, 일부 해외국가의 경우 양육비 불이행시 여권발급 제한 등을 통한 출국금지를 도입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2020. 12. 9.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1. 7. 13. 시행되었음. 이와 대해서는 제382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소위원회 제1차 회의록(2020. 9. 16.) 및 제382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4차 회의록(2020. 12. 8.) 참조

□ 셋째, 출국금지 요청의 주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서는 보험료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주체를 공단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sup>15)</sup>에서는 출국금지 요청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출국금지 요청의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관세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출국금지 요청의 주체를 각각 국세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세청장, 여성가족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주체를 공단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넷째, 현행법<sup>16)</sup>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액을 세대 단위로 산정하고 보험료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지역가입자

15)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6)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 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 나.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2.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

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보험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해당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인지 또는 해당 세대의 세대주 등으로 한정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의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건강보험료 장기·고액체납자 중 공단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501호)이 제출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 보건복지부

- 국세·지방세·관세 등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는 소관기관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유사 입법례가 마련되어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및 보험료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필요한 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함.

-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관세법」에서는 출국금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는 공공재정이고 사실상 준 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국세·지방세·관세에 규정한 출국금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
|--------------|
| 문 의 처        |
| 02)6788-5503 |